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262,000	8,167,860
일반회계		261,627,000	7,848,810
특별회계		10,635,000	319,050
	기타특별회계	10,635,000	319,0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90,000	92,7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48,000	49,44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35,000	25,050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26,000	12,78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456,000	13,680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7,000	210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71,000	29,130
	치수사업특별회계	2,986,000	89,580
	기반시설특별회계	216,000	6,4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7,67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